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나55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혜인

피고,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은, 명상현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 선고 2020. 10. 2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03623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9.12. 접수 제70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1999. 8. 17. 소외 법인과,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체결당일, 중도금 2,500만 원은 1999. 8. 31., 잔금 4,800만 원은 1999. 10. 15. 각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소외 법인은 잔금 수령 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절차에 전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에게 1999. 8. 17. 계약금 500만 원, 1999. 8. 31. 중도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9.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이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2002. 5. 24. 1,000만원, 2009. 10. 27.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7. 16.자 2013카단266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지원 파주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63443호로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이후 소외 법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8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0. "소외 법인은, ① 주무관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소외 법인, 매매일자를 1999. 8. 17.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② 위1항 기재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그 후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1. 23. 경기도지사에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 데 경기도지사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민원문서 보완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소외 법인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자 2017. 3. 21.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

1) 소외 법인은 2013. 9. 3.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원, 채무자 소외 법인,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파주등기소 2013. 9. 4.접수 제771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2. 12. 24. 관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자금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3. 1. 29. "1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및 장기차입 전에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득할 것, ②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전에 소외 법인에서 제출한 2013년 출연금 및 기부금 약속서상 대표이사 출연금 등 3억 5,000만 원을 선(先) 출연할 것(출연 및 기부가 완료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계획 출연금 등 3억 5,000만 원 선(先) 출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됨), ③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전에 별도의 정관변경허가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소외 법인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3) 경기도지사의 위와 같은 조건부 허가에 따라 소외 법인은 1 2013. 7. 4.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F 외 5필지 3,750㎡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얻었고, ② 소외 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였던 G로부터 2013. 6. 27. 3억5,000만 원을 출연·기부받았으며, 3 2013. 7. 5. 파주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내용의 소외 법인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아 위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25.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망 B이 2016.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파주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702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망 B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파주등기소 2018. 8. 23. 접수 제6465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친 다음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소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와 무자력

경기도지사는 2017. 11. 6. 소외 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1)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한편, 소외 법인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은행, K은행, L은행, M은행, N은행 업무지원센터,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2)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B에게 낙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

1)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1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 4. 생략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때6. ~ 10. 생략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2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3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② 소외 법인이 협력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도록 한 결과,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법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소외 법인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위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허가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일방의 거래계약상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4968 판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 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반대로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그 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 당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위 토지거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소외 법인과 E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사실, 망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법인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망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소외법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과 관련하여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에 관한 주장은 모순되어 그 주장 자체로 소외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일응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조차 아직 불명확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환원 여부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의 판단 단계에서 원고의 피대위채권에 관한 주장을 들어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여부

1) 무자력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를 가장하여 제3자(피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채권자는 그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소외 법인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소외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법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법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는 망 B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복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② 소외 법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8. 자 2008마1439 결정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관할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B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별도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법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E이 적극 가담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배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양 계약 사이에는 그 실현에 있어 우열관계가 없다. 이 경우 제1매매계약에는 채권적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1매수인은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참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그매매를 위해서는 관할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8. 26. 자2010마818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직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매매계약의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배임적인 이중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소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E과 공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양도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툴수 없으며, 소외 법인과 E의 배임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별지]

목 록

1. 경기도 파주시 전 360㎡
2. 경기도 파주시 전 640㎡. 끝.

